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2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시·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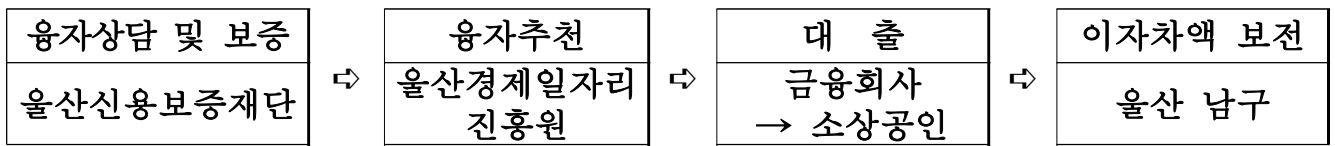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용자기관의 용자금리
 -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가산금리(2%이내)
-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우리 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2%(2년간)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울산신용보증재단
 - ※ 보증서 발급 수수료(보증금액의 0.9%) 발생
- 자금대출 : 7개 금융회사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7. 10.(수) 오전 9시 ~ 자금소진 시 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 0101, FAX 266-7994~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탑지점 2층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 283 - 0101, FAX 266-7994~5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283 - 7135, FAX 700 - 7139

【붙임 1】

용자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원)을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가 사용자(소비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감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